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전형시기) 입학전형은 매년 1회 또는 2회 매 학기 개학 전에 실시한다.

제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자격) 입학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하위 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지원자는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

1.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박사학위과정의 일반전형은 학칙 제6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2. 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교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하는 연구소의 연구원, 병역특혜가 주어지는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대학 겸임교원,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연구과정: 석사학위과정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은 석사학위과정과 같다.

제5조(제출서류)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나.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실점 평균/백분율 표기된 것) 1부
 -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나.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실점 평균/백분율 표기된 것) 1부
 -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6조(전형료)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전형방법) 입학전형의 방법은 서류전형(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학사학위과정 성적,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 성적), 면접고사, 작품심사(예·체능계 미술·디자인학과에 한함)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공지식과 연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배점과 과락기준) 입학전형의 배점, 과락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제9조(선발방법) 선발방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제10조(면접고사위원) 본 대학원장은 각 학과(필요할 경우 전공)별로 3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한다.

제11조(특별전형 시행 여부)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하는 학과(전공)에만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등록포기 및 납입금 환불) 신입생의 등록포기 및 납입금 환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입학취소)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였거나 지원자격 미달자로 판명된 사람은 입학を 취소한다.

제14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은 재입학 여석이 있을 경우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할 수 없다.

②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자퇴 또는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 한다.

③ 재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자퇴 또는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 한다.

제15조(편입학) 각 학위과정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편입학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 전공분야의 석사(박사)학위과정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2. 전형방법: 입학전형의 방법은 서류전형, 면접고사, 작품심사(예·체능계 미술·디자인학과에 한 함)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공지식과 연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면접고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3. 편입학 학기: 전적 대학원에서의 이수 학기에 따라 편입학 학기를 정한다.

가. 한 학기 이수자: 2학기

나. 두 학기 이상 이수자: 3학기

4.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편입학 전 전적 대학원의 학점은 해당 학과장의 심의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5.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편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본 대학원에 편입학한 학기에 따라 적용한다.

6. 편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삭 제>

제17조 <삭 제>

제3장 외국인학생

제18조(입학전형) ① 외국인 학생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21.)

1. 외국인 학생의 입학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학과에 심사 의뢰한다.

2. 해당 학과에서는 본 대학원 수업을 담당하고 지원자의 지원 전공과 관련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의견서에 적정 여부를 판정한다.

3.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심의한다.

② 외국인 학생의 언어능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언어사용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1.)

1.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모집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과정으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

2. 이중언어과정: 모집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한국어 외에 외국어(또는 한국어-외국어 통역 제공)로 진행되는 과정

제19조(지원자격) ① 학칙 제6조에 정한 입학 지원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② 제①항의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어학능력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1.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2. DU 한국어능력시험 50점 이상
3. 수학 가능 확인을 받은 사람

제20조(입학지원서류) 외국인 학생이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지원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본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입학지원서
2.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3.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4. 입학추천서
5. 자기소개서
6. 신분증 사본(지원자 및 부모)
7. 가족관계 입증서류
8. 재정능력 입증서류: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명시된 재정능력 입증서류
9. 학비 및 생활비 조달계획서
10. 학업계획서
11. 작품 또는 성과물(예·체능계에 한함)
14. 학력조회외서: 국내 대학(원)은 제외
15. 어학능력 증명서
 - 가. 공인어학성적 증명서(TOPIK은 3급 이상)
 - 나. 수학가능 확인서(해당 학과장)
 - 다. DU-TOPIK 합격증서

제21조(졸업자격) 외국인으로 입학한 사람은 졸업 전까지 아래 어학능력 최저기준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 시 제1호에 해당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학생은 졸업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예·체능계열 학과 : 3급)
2. 본 대학교 국제처에서 주관하는 한국어연수 수업을 일정 기간 이수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학칙준수) 외국인으로 입학한 사람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3조(제적) 외국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시 제적할 수 있다.

1. 입학 후 30일 이상 장기결석자
2. 출입국관리법과 국내법 위반자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전과

제24조(정규등록) ① 학위과정별 학생은 4회 이상(학·석사연계과정입학생은 3회 이상)의 정규 등록을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7회 이상, 학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2회 이상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9.1.)

② 정규 등록은 수업연한과 수료학점 이수를 완료할 때까지 해야 하는 등록을 말하며,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학점단위등록) ①정규등록학기를 초과하고 미 수료한 학생 및 석사학위수료자 중 논문대체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점단위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20.6.1.)

② 수업료는 대구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6조(휴학 및 복학자의 등록) ① 휴학 당시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휴학자는 복학 시 복학학기의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 휴학 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 학기 등록금은 「대구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기 납부한 등록금 대비 복학하기 등록금이 인상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대체하고 인하가 될 경우 인하액을 반환 후 대체한다.

제27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을 할 수 있는 학생은 본 대학원 수료자로 한다.(개정 2020.6.1.)

제28조(연구등록 절차) ①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② 연구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정규등록 4학기 생 등록금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연구등록비를 소정의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등록비는 석사 1회, 박사 4회 납부하고 이후는 연구등록비를 면제한다.

제29조(연구등록 자격부여) 연구등록을 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부여한다.(개정 2020.6.1.)

1.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절차 진행
2. 도서관 이용과 도서대출
3. 실험실습실 이용
4. 대학원생 학술연구회 참여
5. 학생증 발급

제30조(연구등록 취소) ① 연구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연구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등록비는 소정의 기간 내에 연구등록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게만 전액 환불할 수 있으며, 이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환불 기준은 본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납입금의 반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입금의 반환은 「대구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2조(휴학) ①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학 중인 학생이 계속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일반휴학 기간에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병역을 필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병사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복학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전과 또는 전공 변경) ① 석사학위 과정의 전과 또는 전공 변경은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학기 초 30일 이내에 총장이 허가한다.

② 전과 또는 전공 변경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고사를 행할 수 있다.

③ 전과는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의 평균평점이 B 이상인 학생에게 허가할 수 있다.

④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전과한 학생의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제5장 수업과 학점

제35조(수강신청) ① 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충과목, 개별연구지도, 연구윤리 신청은 예외로 하며,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최종학기(4학기)에 전공과목 3학점을, 학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5.31., 2023.9.1.)

③(삭제 2016.8.13.)

④ 선택(타 학과 개설)과목은 재학 중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신청가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5.31)

⑤ 강의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정정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36조2(학과 및 전공의 수업연한 단축) 학과 또는 전공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단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신설 2023.9.1.)

제37조(수업계획서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과목 개설과 동시에 수업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8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시험(정기시험, 수시평가) 출석, 과제물, 발표 등 수업의 기여도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A, B, C, F 등급으로 처리한다.

제39조(성적정정) 학과목 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오기되었을 경우에는 성적정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40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한 후 군입대 휴학하는 학생에게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41조(출석부 제출) 담당 교과목 교수는 학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대학원 행정실로 출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전공과목(선택과목 포함)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입학자의 수료학점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5.31)
2. 박사학위과정: 전공과목(선택과목 포함)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입학자의 수료학점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8.5.31)
3.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전공과목(선택과목 포함)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8.5.31)

제43조(개별연구학점 및 연구윤리학점) ① 개별연구학점은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논문 제출을 위하여 논문지도교수가 부과하는 학점이며, 연구윤리학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학점이다.

② 개별연구학점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은 2학기,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5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과정 1학점,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 2학점을 교과학점 이외에 취득하여야 하며, 개별연구학점은 합격(P) 또는 불합격(F)으로 평가하고, 미 취득하였을 경우 수료가 되지 않는다.(개정 2018.5.31)

③ 연구윤리학점은 교과학점 이외 1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학생의 전공 계열 또는 연구 분야에 따라 과목(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 또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을 선택하여 이수하며, 합격(P) 또는 불합격(F)으로 평가하고, 미 취득하였을 경우 수료가 되지 않는다.

제44조(보충과목 이수) ① 학과에서 제출된 ‘보충과목 이수관련 동일계 인정학과 선정원’에 의거 인정된 동일계 학과 외에는 비 동일계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비 동일계 입학자는 보충과목 6학점을 학사과정의 해당 학과 또는 타 학과의 동일계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5.31)

③ 박사과정 비 동일계 또는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입학자는 보충과목 12학점을 해당 학과 교육과정의 보충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학과장은 유사한 학과나 본 대학교 특수대학원의 동일계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31)

④ 보충과목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보충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료할 수 없다.

⑤ 보충과목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⑥ 보충과목은 대학원 학칙 제23조의 학위과정별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5조(보충과목 학점인정) ① 해당학과 학위과정의 보충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과목을 하위 학위 과정 및 동등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학생은 보충과목 학점인정원을 입학 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8.5.31., 2023.9.1.)

② 제1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학점으로만 인정하며, 성적은 P(Pass)로 표기한다.

제46조(보충과목 개설)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경우 보충과목은 해당 학과에서 따로 개설할 수 없으며,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해당 학과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을 지정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제47조(학점교류) ① 국내·외 대학원(본 대학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이 B 이상인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보충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학점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에 한정하여 학과장이 인정한 교과목이어야 한다.

제48조(국내·외 현장실습 학점인정) ① 학생의 현장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공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 기업체나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한 현장실습수업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실습교과목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학과장이 현장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기관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하여 실점을 부여한다.

③ 실습교과목은 1학점당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해당 학기에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1개 학기에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 학기 범위 안에서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⑤ 현장실습생은 실습기간동안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장 전공 설치와 교육과정

제49조(전공) ① 학위과정별 각 학과에는 1개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 이상의 학과를 연계하는 특수전공을 둘 수 있다.

② 학위과정별, 계열별, 학과별 전공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학위과정별 학과의 전공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제50조(교육과정 편성) 각 과정의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전공: 전공학문의 연구에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개정 2018.5.31)

2. 개별연구지도: 논문제출을 위한 연구학점을 말한다.

3. 보충과목: 비동일계 또는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출신자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4. 연구윤리: 학생들의 연구윤리 확보에 도움을 주는 과목을 말한다.

제51조(교육과정 개편) 각 과정별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루어지며,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기개편은 4년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개편은 학문적 동향,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제52조(교과목설정의 원칙) 교과목을 설정할 경우에는 국제적 학문 추세에 맞는 각 과정의 학문 수준과 해당 학과의 학문적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전공과목, 보충과목으로 구분하여 각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대학부설연구소는 연구 관련 교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8.5.31)

제53조(강좌개설) 각 과정별 강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개설하여야 한다.

1. 각 학과장은 학기 1개월 전에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강좌개설신청서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학·석사연계과정 예비생이 있는 경우 석사과정 교과목은 예비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학기당 1과목 개설하여야 한다.

3. 대학부설연구소가 연구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관련 학과 학과장을 거쳐 본 대학원장에게 강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설강좌의 수강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후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전공) 별 2개 강좌까지 개설 가능하며, 해당 강좌는 전임교원이 담당해야 한다.

5. 각 학과 개설 강좌수는 개별연구지도를 제외하고 학기당 석사 또는 박사 재학생 인원이 5명 이하 시에는 3강좌, 석사 및 박사 재학생이 5명 이하 시에는 4강좌 이내로 개설하고 재학생 5명 단위로 초과시마다 1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이 2개 이상인 학과, 전공 구분은 없으나 2개 이상의 하위과정 학과(전공)가 연계된 학과, 학·석사연계과정생이 있는 학과, 수료를 위해 반드시 강좌 개설이 필요한 학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8.5.31)

6. 유사교과목은 학과 또는 전공 간 협의하여 통합 개설을 권장하고, 중복개설은 지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원격강좌는 각 학과별 학기당 6학점 이내 또는 개설 강좌 수의 30% 이내로 개설할 수 있다.

제54조(공동강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거나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대학원장은 본 대학교 내의 타 대학원 또는 타 대학교 대학원과의 학점교류에 의한 공동강의를 승인할 수 있다.

제55조(교과목 담당교수 임무) 본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한 교수는 학기당 소정시간의 강의를 충실히 하여야 하며 결강 시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담당과목 학점제한) 동일 교수가 한 학기에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 학점 수는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강사위촉) (삭제 2020.3.1.)

제58조(교과목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과목의 담당교수, 강의시간, 강의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학과장은 지체 없이 변경신청서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제59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60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1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학생

2. 종합시험: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석사학위과정 16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4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이상인 학생, 단, 학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종합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23.9.1.)

제61조(응시절차) ① 외국어시험 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터넷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시험 응시자는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TOEIC 또는 TEPS, TOEFL, IELTS, TOPIK 성적우수자로서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자는 인터넷 신청 후 증빙자료를 신청기한 내에 본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수험료)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응시자에게는 소정의 수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평가기준) ①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로 된 논문과 저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종합시험은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분야의 학식에 대하여 종합 평가한다.

제64조(시험과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시험

가.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영어권인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로 하고, 비영어권의 외국인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한다.

나. TOEIC, TEPS, TOEFL, IELTS 또는 TOPIK 성적 우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성적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3.1., 2023.9.1.)

계 열	TOEIC	TEPS	TOEFL	IELTS	TOPIK
			iBT		
인문·사회	750	594	85	6.0	4급 이상
자 연	700	555	79	5.5	4급 이상
공 학	650	520	74	5.5	4급 이상
예 · 체능	550	450	63	5.0	4급 이상

※ TOPIK(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 학생에 한하며,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제외한다.

2. 종합시험

가. 석사과정 : 시험과목은 학생이 이수한 전공과목 2과목으로 학생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교수에게 1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05.31)

나. 박사과정 : 시험과목은 학생이 이수한 전공과목 3과목으로 학생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교수에게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05.31)

제65조(과목별 배점과 시간)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각 60분의 시험 시간을 부여한다.

제66조(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합격점수는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석·박사과정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서 합격기준에 미달된 과목은 해당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제67조(관리 및 내용)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해당 학과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68조(출제 및 채점위원 위촉)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학과장이 해당 학과 전임교원과 협의를 거쳐 전공분야 교원에게 위촉한다. 다만, 학생의 부모,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교원은 출제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각종시험의 채점은 출제위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9조(결과보고) 학과장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학위논문

제7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

1. 수료예정자 또는 연구등록을 한 수료자
2.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이상인 학생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4.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에 합격한 학생

제71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영역의 기초지식 확인
2. 논리전개의 타당성
3. 학계에의 기여도
4. 독창적인 연구의 심도
5. 논문전체 내용의 체계

6. 참고문헌과 인용문의 타당성

제72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경우에 따라 공동논문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공동논문지도교수는 정년트랙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공분야 권위자로 한다.(개정 2019.3.1.)

③ 논문지도교수의 제청은 입학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입학 학기 기준으로 정년 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경우 선정한다.

④ 학생의 부모,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교원은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없다.

⑤ 학과장은 학위논문지도교수제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외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별지 제1-1호서식)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⑦ 논문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 석사학위과정은 1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⑧ 논문지도교수 1명당 논문지도 대상 학생은 각 과정별 학생을 합쳐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명을 초과할 경우 논문지도교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대필 등 부정행위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논문지도교수에게는 해당 학기부터 2년 동안 논문지도 대상 학생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다.

제73조(논문계획서 발표와 심사) ① 논문계획서 발표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초부터,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은 2학기 초부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6학기 초부터 할 수 있다.

② 논문계획서 발표의 심사 합격은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부터 학위논문 발표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3.1.)

③ 논문계획서 발표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 학과 교수 3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3.1.)

④ 논문지도교수는 논문계획서 발표와 심사가 종료되면 논문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논문계획서를 재심사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논문제목 변경) 논문계획서,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논문지도 진행 중 논문 제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논문제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제75조(예비논문 발표와 심사) (삭제 2019.3.1.)

제7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하고,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 인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 분야 권위자로 위촉한다.(개정 2020.11.1.)

② 명예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보며, 만 70세 이상자는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학위과정별 논문심사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정년트랙전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로 한다.(개정 2020.11.1.)

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삭제 2019.3.1.)

⑤ 논문지도교수가 외유 등 특별한 사유로 논문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분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19.3.1.)

제77조(심사위원장의 임무)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을 할 때에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78조(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임무) 논문계획서 발표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교수는 본 규정 제76조에 따라 학과장과 협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논문 발표 요지, 논문 전체 내용과 참고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제79조(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병, 외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0조(학위논문 공개발표와 심사) ① 논문계획서 발표 심사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 규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충족하여야만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3.1.)

② 학위논문 공개발표 신청자는 학위논문 공개발표 심사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와 소정의 논문심사료, 그리고 논문심사위원 추천서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③ 학위논문은 1회 이상 공개발표하고, 심사위원장은 학위논문 공개발표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학위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81조(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 ① 학위논문 심사는 석사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 공히 3회 이상 사전에 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공개리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초심은 논문내용의 학술적 가치검토, 논리적인 전개의 타당성 검토, 창의적인 내용 확인, 이미 발표된 논문부분의 삽입여부 검토, 수정·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학과에 따라 학위논문 공개 발표 심사를 초심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3.1.)

2. 중심은 수정·보완이행 확인, 논리의 명확성 검토, 논문체제 검토, 참고문헌의 활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종심은 최종심사로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논리전개의 타당성 및 수정·보완 사항 등을 포함하여 학위 청구논문의 내용과 전공지식 및 학위 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3.1.)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학위논문 및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석사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과정별 논문심사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3.1.)

1. 석사학위과정: 심사위원 전원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해당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위논문 심사연기원(별지 제11호 서식)을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⑤ 논문심사 불합격자에게는 논문심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2조(학위논문 작성법) ① 학위논문 작성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개정 2019.3.1.)

②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문 성격상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어는 영어만 가능하다.

제83조(학위논문 양식과 체계) 학위논문은 양식과 체계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84조(학위논문 제본 방법) 학위논문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제본을 하여야 한다.

1. 판종 : 4·6배판 (190mm × 260mm)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백색 모조지

3. 표지

가. 석사학위과정 : 쥐색 레자크지 200g/m² 소프트

나. 박사학위과정: 연갈색 레자크지 200g/m² 소프트

4. 인쇄방식 : 마스터 또는 옵셋으로 인쇄하되 양면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단면으로 인쇄할 수 있다.

제85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완성논문 석사 4부, 박사 4부(인준 2부 포함)
3. 저작물 이용허락서
4. 파일제출확인서

제86조(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학위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학위논문 포상과 징계) ①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 ② 우수논문 심사위원은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③ 우수논문 심사방법과 절차는 본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④ 논문대필 등 부정행위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학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장 학위수여

제88조(학위수여 대상자 결정) ① 본 대학원장은 논문심사를 통과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학생을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석·박사학위통합과정생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 석사학위과정의 수여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석사학위수여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제88조의 2(비 논문 석사학위) 학칙 제31조 제2항에 의한 석사학위과정 중 비논문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6.01.)

제89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1. 본 대학원장은 명예박사 학위수여 후보자의 공적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3.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결정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0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다만, 명예박사 학위수여는 정규 학위수여 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제91조(학위기 수여) 본 대학원 석사와 박사, 명예박사학위기 수여는 본 대학원장의 인정에 의하여 총장이 행한다.

제92조(학위기 수여 및 복장) ① 석사와 박사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색깔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② 학위별 후드 내부의 색깔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 청색, 노란색, 청색
2. 박사학위 : 청색, 백색, 홍색

③ 학위모의 수실 색깔은 석사모는 백색,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제10장 연구과정

제93조(연구과정) 연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석사과정에만 설치한다.

제94조(입학자격 등) 연구과정의 입학지원자격, 제출서류, 전공분야, 입학시기는 석사과정에 준한다.

제95조(입학전형)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정한다.

- 제96조(수학연한)**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며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통합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97조(수료학점)** 연구과정의 수료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 제98조(수료증명서)** 연구과정의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9조(연구생 제적)** 연구과정학생이 자격미달 혹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대학원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장 학생활동

- 제100조(연구활동)** 학생은 사전에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전공분야에 관계되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1조(단체활동)** 학생은 연구활동과 친목을 위한 모임을 만들 수 있으나, 이 모임은 사전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2조(학생자치 활동)** ①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본 대학원에 학생회를 둘 수 있으며 사전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본 대학원 학생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장학금

- 제103조(장학금의 종류)** ①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내장학금

- 가. 외국어성적우수장학금: (삭제 2021.3.1.)
- 나. 연구조교장학금: (삭제 2023.9.1.)
- 다. 특별장학금: 국내·외 학술논문발표실적, 수업과 학문연구활동, 학생의 가사사정, 본 대학교 또는 대학원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학금
- 라. 국가고시장학금: (삭제 2020.3.1.)
- 마. 외국인장학금: 본 대학원에 유학중인 외국인학생(외국인연구조교, 정부초청장학생, 학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3.9.1.)
- 바. 연구장려장학금: 우수한 신입생 유치와 본 대학원생들의 연구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석·박사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사. 교직원복지장학금: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아. 학술연구실적장학금: 국내·외 학술논문게재 등 연구실적이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자. 장애학생장학금: 장애학생에게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 차. 석사과정 이공계신입생장학금: (삭제 2021.3.1.)
- 카. 저소득층장학금: 경제적 가계 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타. 협정기관장학금: 협정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파. 학· 석사연계과정장학금: 학· 석사연계과정으로 선발되어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하. 한국어연수장학금: (삭제 2020.3.1.)
- 거. 글로벌 학술연구지원장학금: 최근 3년간 국제저명 학술논문을 기술평점 이상 게재 또는 우수연구상 수상 교원이 추천한 학생

2. 교외장학금

- 가. 동창회장학금
- 나. 그 밖의 외부 장학금

- ② 각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4조(장학금 지급제한)** ① 장학금은 수업료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학금 지급원칙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으로 정한다.(개정 2021.3.1.)
- ②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초청장학생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0.3.1.)
- ③ 재학 중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05조(교체추천불허)**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된 학생 중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학대상자의 교체추천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장 포상과 징계

- 제106조(상벌심의)** 본 대학원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7조(포상)** 본 대학원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유급자와 징계처분을 받았던 학생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1. 공로상: 학교와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학생
 2. 모범상: 타 대학원생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3. 우수연구상: 학술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생(개정 2020.6.1.)
- 제108조(포상 발의)** 제10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학과장은 표창추천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 제109조(징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제한 등으로 구분한다.
- 제110조(근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본 대학원생은 3일 이상 7일 미만의 근신에 처한다.
1.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2. 학생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학생
 3. 면학 분위기를 흐리게 한 학생
 4. 그 밖에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
- 제111조(유기정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본 대학원생은 7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1. 제110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학생
 3. 단체행사를 교란하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동조한 학생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다만, 정상에 따라 시험과목 중 일부과목의 학점 취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제110조 각호보다 심한 상태의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
- 제112조(무기정학)**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본 대학원생은 1개월 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제111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이유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린 학생
 3. 학우에게 집단 폭행을 한 학생
 4. 고의로 학교 시설을 파괴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학생
 5. 시험 중 대리 응시를 한 자와 이를 응시토록 주선한 학생. 다만, 해당학기 수강하는 과목의 일부 또는 전과목의 학점취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6. 전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7. 학생회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8. 그 밖에 제111조 각호보다 심한 상태의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
- ②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징계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과장의 발의에 의하여 본 대학

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113조(제적 또는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본 대학원생은 제적 또는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을 제한한다.

1. 제112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학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학생
3. 본 대학원장의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게 한 학생
4.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해당 교직원의 위신을 심하게 추락시킨 학생
5.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학생
6. 성향이 불량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제114조(징계절차)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학과장은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비위사실진술조서(별지 제15호 서식)
2. 징계혐의자 명단(별지 제16호 서식)
3. 징계사유설명서(별지 제17호 서식)
4. 징계혐의자주장서(별지 제18호 서식)

②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인 대학원생을 출석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별지 제19호 서식)

제115조(재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의결(별지 제20호 서식)을 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

제116조(권리상실) 이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은 학생은 본 대학원생으로서 부여받은 모든 권리가 상실 또는 정지된다.

제117조(처벌의 감면) 본 대학원장은 징계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본 대학원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8조(통보) 본 대학원장은 징계사실을 해당학과와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별지 제21호 서식)

제119조(학적부 등재) 징계처분자에게는 징계사항을 학적부에 등재한다. 다만, 수료 시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처분 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제14장 대학원 학과장

제120조(학과장 선정) 학과장 선정은 본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1조(학과장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과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신임 학과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22조(학과장의 임무) 학과장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과 학생들의 지도와 감독
2.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
3. 논문지도교수 선정에 대한 사항
4. 학생들의 등록과 학적변동에 대한 지도
5. 타 학과간의 상호 협조
6. 조교와 연구조교에 대한 지도감독
7. 학점에 대한 지도와 확인
8. 학위논문제출에 관한 제반사항 지도와 확인
9. 학생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10. 학칙과 본 대학원 운영규정 중에 학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협조와 학생생활전반에 대한 확

인 지도

제123조(학과 교수회의) 학과장은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학과의 전체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장 운영위원회

제124조(구성 및 임기) ①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에는 일반대학원장이, 간사는 행정실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5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6조(심의사항)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제49조제2항에 의한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본 대학원 학과(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본 대학원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7조(회의 및 결정)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규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입학에관한내규」, 「대학원등록, 휴학, 복학, 자퇴, 제적 및 전과에관한내규」, 「대학원수업및학점에관한내규」, 「대학원교육과정운영에관한내규」, 「대학원보충과목이수에관한내규」, 「대학원외국에및종합시험에관한내규」, 「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 「대학원학위수여에관한내규」, 「대학원연구등록에관한내규」, 「대학원연구과정에관한내규」, 「대학원장학금에관한내규」, 「대학원외국인학생에관한내규」, 「대학원상벌내규」, 「대학원학과장에관한내규」는 폐지한다.

③ (각 내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위 ②항의 내규가 폐지됨에 따라 이 규정 시행 일 현재 재적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당시 일반대학원 미술·디자인학과 회화전공 재적생은 현대미술전공에 재적생으로, 수료생은 변경 전 해당 전공(회화전공) 수료생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며, 연구윤리 이수는 2016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재적생이 개정 전 이수한 공통과목은 전공과목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과 및 정원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연구등록 (석사)는 2020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논문심사위원 구성 변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된 학과 학위과정은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강좌개설) 제7호에 관한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위과정별 학과와 전공(개정 2019.10.1., 2020.9.1., 2021.5.1., 2022.3.1., 2023.9.1.)

계 열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인문 사회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
	문화예술		문예창작, 문화콘텐츠
	영어영문	영어영문	영어영문학
	법학	법학	공법, 사법
	행정	행정	행정학
	도시	도시	도시행정, 지역사회개발·복지, 도시·지역계획
	부동산학	부동산학	부동산학
	경제	경제	석사과정: 경제학 박사과정: 경제학
	무역	무역	무역상무
	회계	회계	회계학
	경영	경영	석사과정: 경영학 박사과정: 경영학, 보험금융학
	관광경영	관광경영	관광경영학
	사회복지	사회복지	석사과정: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 박사과정: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
	청소년상담복지	-	청소년상담복지
	가정복지	가정복지	가정복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문헌정보	문헌정보	문헌정보학
	심리	심리	심리학
	-	상담	상담학
	지리	-	지리학
	-	사회교육	중등사회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학
	특수교육	특수교육	석사과정: 특수교육 박사과정: 시각장애아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지적장애아교육,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특수교육리더십
	장애	장애	장애학
자연	수학	수학	수학
	통계	통계	응용통계학
	물리	물리	응용물리학
	화학	화학	화학
	생명과학	생명과학	생태·분류학, 분자·세포생물학
	과학교육	과학교육	과학교육, 환경교육
	원예·조경	원예·조경	원예학, 조경학
	자연자원	자연자원	식품환경안전학, 생명산업, 산림자원학, 동물자원학
	재활과학	재활과학	직업재활, 언어치료, 물리치료, 재활심리, 재활공학, 작업치료
	식품영양	식품영양	식품영양학
	간호학	-	간호학
공학	건축공학	건축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토목공학	토목공학

계 열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환경공학	-	환경공학
	산업공학	산업공학	산업시스템공학
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및자동차공학
	식품공학	식품공학	식품공학
	생명공학	생명공학	생명공학
	화학공학	-	화학공학
	전자공학	전자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정보공학	컴퓨터정보공학	석사과정: 컴퓨터정보공학 박사과정: 전산공학, 정보공학
	-	환경·화학융합공학	환경·화학융합공학
	-	재활산업	재활산업학
	스마트융합시스템공학	-	스마트융합시스템공학
	IT융합공학	IT융합공학	IT융합공학
	기계융복합공학	-	기계융복합공학
	신소재에너지공학	신소재에너지공학	신소재에너지공학
예·체능	체육	체육	체육학
	스포츠레저	스포츠레저	스포츠레저학과
	미술·디자인	미술·디자인	현대미술, 시각디자인, 영상·애니메이션, 산업디자인, 생활조형디자인, 서비스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디자인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별표 2] 석사학위복 학위종별 후우드 색깔 (개정 2019.10.1., 2020.9.1., 2022.3.1., 2023.9.1.)

학위	후우드 색깔	학 과
문학석사	흰색	한국어교육학과, 문화예술학과, 영어영문학과, 청소년상담복지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석사	흰색	사회복지학과
가정복지학석사	흰색	가정복지학과
문헌정보학석사	흰색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석사	흰색	유아교육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석사	자색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법학석사	자주색	법학과
행정학석사	남색	행정학과, 도시학과
부동산학석사	남색	부동산학과
경제학석사	진밤색	경제학과
무역학석사	연한밤색	무역학과
경영학석사	연한밤색	경영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석사	연한밤색	관광경영학과
이학석사	노란색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재활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재활심리학석사	노란색	재활과학과(재활심리 전공)
과학교육학석사	노란색	과학교육학과
디자인학석사	진회색	실내건축학과, 패션디자인학과
공학석사	오렌지색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생명공학과, 토목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환경공학과, 전자공학과, 스마트융합시스템공학과, IT융합공학과, 기계융복합공학과, 신소재에너지공학과
농학석사	연초록색	자연자원학과, 원예·조경학과
조형예술학석사	진홍색	미술·디자인학과
체육학석사	쑤색	체육학과, 스포츠레저학과
장애학석사	흰색	장애학과
간호학석사	주황색	간호학과

[별표 3] 박사학위복 학위종별 후우드 색깔 (개정 2019.10.1., 2021.5.1., 2022.3.1., 2023.9.1.)

학위	후우드 색깔	학 과
문학박사	흰색	한국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특수교육학과
문헌정보학박사	흰색	문헌정보학과
교육학박사	연한청색	유아교육학과, 과학교육학과, 사회교육학과
법학박사	자주색	법학과
행정학박사	남색	행정학과, 도시학과
부동산학박사	남색	부동산학과
경제학박사	진한밤색	경제학과
무역학박사	연한밤색	무역학과
경영학박사	연한밤색	경영학과
회계학박사	연한밤색	회계학과
관광경영학박사	연한밤색	관광경영학과
철학박사	진한 청색	사회복지학과, 상담학과, 가정복지학과, 장애학과
심리학박사	진한 청색	심리학과
이학박사	노란색	수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물리학과, 재활과학과, 체육학과, 식품영양학과, 스포츠레저학과
통계학박사	노란색	통계학과
재활심리학박사	노란색	재활과학과(재활심리 전공)
농학박사	연한 초록색	자연자원학과, 원예·조경학과
공학박사	오렌지색	식품공학과, 토목공학과, 생명공학과, 산업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건축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환경·화학융합학과, 재활산업학과, IT융합공학과, 신소재에너지공학과
조형예술학박사	진홍색	미술·디자인학과
디자인학박사	진홍색	패션디자인학과, 실내건축학과

【별지 제1호 서식】

학위논문 지도교수 제청서

[illegible]

위와 같이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제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21 22 23

학과

학과장:

(인)

대학원장 귀하

담 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학위논문 지도교수 변경 제청서

(석사 · 박사)학위과정 학과 전공 입학년월 : 년 월
성 명(한자) : () 연락처 : () -

변 경 전				변 경 후			
직 급	학위종별	성 명	세부전공	직 급	학위종별	성 명	세부전공

변경사유 :

위와 같이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변경전 지도교수 : (인)
변경후 지도교수 : (인)
학 과 장 : (인)

대학원장 귀하

담 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논문계획서 심사결과 보고서									
과 정	석사·박사	학 과			전 공			학 기	제출자
심사위원 (지도교수를 포함한 관련학과 3인 이상)		(인)	점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인)	점	200					
		(인)	점	: ~ :					
		(인)	점					명	
1. 논문계획 가. 연구주제 나. 연구동기 및 기대효과 다. 연구내용 및 방법					라. 연구일정 마. 참고문헌(별지 사용 가능) 2. 계획서 심사평				

- ※ 심사위원께서는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다음 학기부터 공개 발표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IRB 심의를 희망하는 경우, 생명윤리위원회(☎51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학원장 귀하

담 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논문제출자	과 정		학 과		
	학 번		성 명		
지도교수	학 과		성 명		
논문제목	국 문				
	영 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을 하는 데에 논문대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인)

확 인 자 : 지도교수 (인)

대학원장 귀하

담 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별지 제3호 서식】

논문제목 변경 신청서

(석사 · 박사)학위과정

학과

전공

성명 :

연락처 : () -

변경 전 논문제목	변경 후 논문제목

변경사유 :

위와 같이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논문제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5월 20일

지도교수 : (인)

학 과 장 : (인)

대학원장 귀하

담 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 심사대상자

(석사 · 박사)학위과정

학과

전공 성명 :

입학년월 : 년 월, 수료년월 : 년 월(예정)

논문제목 :

2. 심사위원

소속대학	성명(개인번호)	직 급	학위종별	세 부 전 공	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타교 교원의 경우 불임의 타교 심사위원 신상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 본 대학원 운영규정 제76조

제7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하고,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 인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해당 분야 권위자로 위촉한다.

② 명예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보며, 만 70세 이상자는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학위과정별 논문심사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정년트랙전임교원 또는 명예교수로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2. 박사학위과정 :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붙임 : 외부 심사위원 신상명세서

20 11 10 09

지도교수 : (인)

학 과 장 : (인)

대학원장 귀하

담 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외부 심사위원 신상명세서

※ 공란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주소					
연락처	자택	() -	연구실	() -	
	휴대폰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주소					
연락처	자택	() -	연구실	() -	
	휴대폰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주소					
연락처	자택	() -	연구실	() -	
	휴대폰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주소					
연락처	자택	() -	연구실	() -	
	휴대폰				

학위논문 심사위원 변경 신청서

1. 논문제출자

과 정	학 과	전 공	성 명
석사 · 박사			

2. 심사위원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직 급	학위종별	성 명	세부전공	직 급	학위종별	성 명	세부전공

변경사유 :

위와 같이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변경전 심사위원 : (인)

변경후 심사위원 : (인)

지 도 교 수 : (인)

학 과 장 : (인)

대 학 원 장 귀 하

담 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학위논문 공개발표 심사신청서

학위과정	석사 · 박사	학 과		전 공	
성명/학번	성명 :			전 화	() -
	학번 :			휴 대 폰	
입 학 년 월	년 월		수료년월	년 월(예정)	
논 문 제 목					

☞ 심사비 : 석사학위과정 100,000원, 박사학위과정 370,000원
☞ 심사비를 아래의 대학원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은행 207-04-000372-6 예금주:대구대대학원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입금)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도교수 : (인)
학 과 장 : (인)

대 학 원 장 귀 하

담 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1. 심사 대상자

학과	전공	성명 :
논문제목 :		

2. 심사일자 및 장소

구분	초심	중심	종심
심사일자			
심사장소			

3. 논문 및 구술시험 성적 (100점 만점에 실점수 기재)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평균 (점수)
성명 : (점수:)	성명 : (점수:)	성명 : (점수:)	

논문심사요지 :

위와 같이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장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대학원장 귀하

담당	실장	부원장	원장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1. 심사 대상자

학과전공성명 :

논문제목 :

2. 심사일자 및 장소

구 분	초 심	중 심	중 심
심사일자			
심사장소			

3. 논문 및 구술시험 성적(100점 만점에 실점수 기재)

심사위원장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평 균 (점수)
성명 : (점수:)	성명 : (점수:)	성명 : (점수:)	성명 : (점수:)	성명 : (점수:)	성명 : (점수:)

논문심사요지 : 별첨

위와 같이 박사학위논문 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 년 월 일

심사위원장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대 학 원 장 귀 하

담 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학위논문 심사 연기원

▣ 논문제출자

과 정	학 과	전 공	성 명
석사 · 박사			

연기사유 :

위와 같이 학위논문 심사를 연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지 도 교 수 : (인)

학 과 장 : (인)

대 학 원 장 귀 하

담 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 본인의 학위청구논문은 지도교수님의 지도하에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이에 논문표절 예방프로그램 검증 결과인 [논문유사도 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 만약 제반 연구윤리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학위 취소 등 학교의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서 약 자 : (인)

확 인 자 : 지도교수 (인)

대 학 원 장 귀 하

담 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표 창 추 천 서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소 속	학과 전공 학기(학번 :)		
주 소		전 화	- -
		휴대폰	- -
포상종류	공로상(), 모범상()		
추천내용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붙임 : 증빙자료 년 월 일 추천자 : 학과 (인) 확인자 : 학과장 (인) 대학원장 귀하			

비 위 사 실 진 술 조 서

성명	(한 글)	전 화	-	-
	(한 자)	휴대폰	-	-
소속	학과 전공 학기(학번 :)			
주소				
비위사실 :				
위와 같이 진술 합니다.				
년 월 일				
진 술 인 : (인)				
대학원장 귀하				

※ 비위사실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자세히 기재해야 함.

징 계 형 의 자 명 단

번호	성 명 (한 자)	과 정	학 번	징 계 사 유
		학 과	주민등록번호	
		학 기	주 소	
	()			
	()			
	()			
	()			
	()			
	()			

징 계 사 유 설 명 서

성 명		학 번		주민등록번호	
소 속	학과 전공 학기차			입학년월	년 월
주 소				휴대폰	
징계사유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학 번	
	소 속	학과 전공	학 기 차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는 상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일반대학원 운영규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학 번	
	소 속	학과 전공	학 기 차	
본인은 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징 계 처 분 통 고 서

성 명	학 번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대학원 학과 전공	
징계처분 주 문	에 처한다			
징계처분 사 유				
징 계 기 간 : 200 . . - 200 . . (일간)				
위와 같이 징계처분함을 통고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대 학 교 총 장 (인) 귀하				